

## 2020. 1.11. 경감승진 경찰실무종합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kpa.co.kr](http://www.kpa.co.kr)

### 1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
- ②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찰 활동이다.
-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 ④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해설** → ④ (X) 형식적 의미의 경찰 일부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일부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할 뿐이지 양자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포괄)하는 관계가 아니다. <핵심정리 12p>

①②③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12p>

[핵심정리]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 구 분    | 형식적 의미의 경찰                                                                                                                                                                                                                                                                                                                                                                | 실질적 의미의 경찰                                                                                                                           |
|--------|---------------------------------------------------------------------------------------------------------------------------------------------------------------------------------------------------------------------------------------------------------------------------------------------------------------------------------------------------------------------------|--------------------------------------------------------------------------------------------------------------------------------------|
| 개 념    | ① 실정법상·조직법상 개념<br>②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찰활동<br>→ 국가별로 차이가 나는 유동적 개념<br>③ 사법경찰, 경찰의 서비스 활동 등                                                                                                                                                                                                                                                          | ① 학문상(실무상×) 정립된 개념 - 독일행정법학에서 유래<br>②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 →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br>③ 행정경찰, 예방경찰, 자치경찰 등 |
| 양자의 관계 |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 일부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일부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할 뿐이지 양자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포괄)하는 관계가 아니다.<br>② 일반행정기관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지는 않는다. → 일반행정기관에서도 '경찰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때의 '경찰기능'은 실질적 경찰개념을 의미한다.<br>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한 불심검문은 경찰상 즉시강제(불심검문의 성격에 관해 학설의 다툼이 있음)의 권력작용이라는 면에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고, 실정법에서 경찰행정기관에 그 권한을 맡기고 있으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기도 하다. |                                                                                                                                      |

**정답** ④

## 2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협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위협’은 보호받는 개인 및 공동의 법익에 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뜻한다.
- ② 위협에 대한 인식은 외관적 위협, 위협협의, 추상적 위협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위협협의’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협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불확실한 경우를 말한다.
- ④ 외관적 위협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경찰상 위협에 해당하는 적법한 개입이므로 경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

- ① (X) 보호받는 개인 및 공동의 법익에 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는 손해를 의미한다. <핵심정리 15p>
- ② (X) 위협에 대한 인식은 외관적 위협, 위협협의, 오상위협(추정적 위협)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핵심정리 16p>
- ③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16p>
- ④ (X) 경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 <핵심정리 16p>

[핵심정리] 위협에 대한 인식

- ① 외관적 위협 :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잘못 긍정한 경우 → 경찰관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단, 국가의 손실보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심야에 경찰관이 사람을 살려달라는 외침소리를 듣고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노인이 크게 커놓은 TV 형사극 소리였던 경우
- ② 위협 협의 :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협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불확실한 경우를 말하며, 위협의 존재여부가 명백해질 때까지 예비적으로 행하는 위협조사 차원의 경찰개입은 정당화됨
- ③ 오상위협(추정적 위협) : 객관적으로 위협의 외관 또는 협의가 정당화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위협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 → 경찰관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국가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정답** ③

## 3 다음은 경찰의 부패원인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 ‘전체사회 가설’은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요 원인 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 ㉡ ‘썩은 사과 가설’은 선배경찰의 부패행태로부터 신임경찰이 차츰 사회화되어 신임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 ㉢ 서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대해 펠드버그는 작은 호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이 큰 부패를 범하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한다.
- ㉣ ‘구조원인 가설’은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될 경우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고 보는 이론이다.

① ㉠(O) ㉡(X) ㉢(O) ㉣(X)

② ㉠(O) ㉡(O) ㉢(O) ㉣(X)

③ ㉠(X) ㉡(O) ㉢(O) ㉣(X)

④ ㉠(O) ㉡(X) ㉢(O) ㉣(O)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pa.co.kr](http://www.kpa.co.kr) 에서 제공됩니다.



김재규경찰학원

- 해설** → ㉠ (X) 선배경찰의 부패행태로부터 신입경찰이 차츰 사회화되어 신입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고 보는 이론은 구조원인 가설이다.
- ㉡ (X)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될 경우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고 보는 이론은 작은 호의 가설이다.
- ㉢ ㉣ 옳은 설명이다. [이상 핵심정리 22,23p]

**정답** ①

####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동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서 규정하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 동호인회 · 동창회 · 향우회 · 친목회 · 종교단체 ·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동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서 규정하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

- 해설** → 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1호 <핵심정리 33p>
- ② 동법 제8조 제1항 <핵심정리 31p>
- ③ 동법 제8조 제3항 제3호 <핵심정리 32p>
- ④ (X)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 동호인회 · 동창회 · 향우회 · 친목회 · 종교단체 ·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동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서 규정하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동법 제8조 제3항 제5호). <핵심정리 32p>

**정답** ④

#### 5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은 백범 김구이며, 대한민국 경찰 역시 임시정부의 경찰활동 또는 경찰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② 미군정 시기에는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는 등 조직 작용법적 정비 가 이루어졌다.
- ③ 1946년 이후 중앙행정기관이었던 경무부(警務部)가 1948년 「정부조직법」상에서 내무부 산하의 국(局)으로 격하되었다.
- ④ 1969년 「국가공무원법」의 특별법인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었다.

**해설** → ① <핵심정리 39p>

② (X)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된 것은 정부 수립 이후인 1953년이다. <핵심정리 38p>

③ <핵심정리 38p>

④ <핵심정리 38p>

[핵심정리] 정부 수립 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      |                                                                                                                                                                                                                                                                                                                           |
|------|---------------------------------------------------------------------------------------------------------------------------------------------------------------------------------------------------------------------------------------------------------------------------------------------------------------------------|
| 주요내용 | 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경무부가 내무부 소속의 치안국으로 격하 → 정부조직법 제정에 참여한 구성원이 대부분 일제 강점기의 관리로 구총독부나 일본 정부의 과거 행정조직을 모방하였기 때문<br>②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정(1953년) → 경찰의 임무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라는 영미법적 사고를 처음으로 반영<br>③ 국가공무원법의 특별법인 경찰공무원법 제정(1969년)<br>④ 1991년 경찰법 제정 이전에는 중앙 및 지방경찰은 내무부 및 시도지사의 보조기관으로 관청의 지위 갖지 못함 cf. 경찰서장은 관청지위 가짐 |
| 특징   | ① 독립국가로서 한국역사상 최초로 자주적인 입장에서 경찰을 운용<br>② 해양경찰업무, 전투경찰업무가 정식으로 경찰의 업무범위에 추가되고, 소방업무가 경찰의 업무에서 배제됨<br>③ 1960년 3·15부정선거 개입 등으로 인해 경찰에 대한 정치적 중립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였음                                                                                                                                                              |

**정답** ②

## 6 훈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훈령의 형식적 요건으로는 훈령권이 있는 상급관청이 발한 것일 것,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된 사항일 것을 들 수 있다.
- ② 훈령의 실질적 요건으로는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명확할 것, 내용이 적법하고 타당할 것, 내용이 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을 들 수 있다.
- ③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 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야 하지만,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 ④ 하급관청 구성원에 변동이 있더라도 훈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해설** → ① (X) 훈령의 형식적 요건으로는 훈령권이 있는 상급관청이 발한 것일 것,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된 사항이 아닐 것을 들 수 있다. <핵심정리 46p>

②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45, 46p>

[핵심정리] 훈령과 직무명령

|             |        |                                                                                                                                                            |                                              |
|-------------|--------|------------------------------------------------------------------------------------------------------------------------------------------------------------|----------------------------------------------|
| 차<br>이<br>점 | 개념     | ① 상급경찰관청이 하급경찰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br>②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야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음<br>③ 훈령의 종류에는 ‘협회의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이 있음 | 상관(상급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하(하급공무원)에게 발하는 명령        |
|             | 구속 대상  | 경찰기관의 의사를 구속                                                                                                                                               | 명령을 받은 당해 경찰공무원 개인의 의사를 구속                   |
|             | 효력     | 경찰기관을 구성하는 경찰공무원이 변경·교체되어도 유효                                                                                                                              | 직무명령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변경·교체시 효력 상실                 |
|             | 위반의 효과 | 훈령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이 아니며, 행위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 직무명령에 대한 위반은 위법은 아니나 공무원관계에서의 의무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됨 |
|             | 경합     | ① 주관상급관청과 비주관상급관청의 것일 때에는 주관상급관청의 훈령에 따름<br>② 주관상급관청이 상·하관계에 있는 때에는 직근상급경찰관청의 훈령에 따름<br>③ 주관상급경찰관청이 불명확한 때에는 주관쟁의의 방법으로 해결                                 |                                              |
| 공통점         |        |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음                                                                                                                                      |                                              |
| 양자의 관계      |        |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격을 가지나(훈령의 하나인 ‘지시’를 들 수 있음),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갖지 못한다.                                                                                             |                                              |

[핵심정리] 훈령의 요건

| 형식적 요건                                                                            | 실질적 요건                                                        |
|-----------------------------------------------------------------------------------|---------------------------------------------------------------|
| ① 훈령권 있는 상급관청이 발한 것일 것<br>②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br>③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닐 것 | ①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명확할 것<br>② 내용이 적법하고 타당할 것<br>③ 내용이 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 |

정답 ①

7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③ 위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해설** → ① (X)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경찰법 제5조 제3항). <핵심정리 48p>  
 ② (X)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동법 제5조 제2항). <핵심정리 48p>  
 ③ (X)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동법 제6조 제1항). <핵심정리 48p>  
 ④ 동법 제7조 제1항 <핵심정리 48p>

**정답** ④

## 8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상 수사경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직무 관련 금품 향응 수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인권침해, 편파수사 등에 관한 시비로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수시로 진정을 받는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5년간 연속으로 비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 하여야 한다.  
 ④ 2년간 연속으로 수사부서 전입을 기피하는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

- 해설** → ①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핵심정리 56p>  
 ② (X) 인권침해, 편파수사 등에 관한 시비로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수시로 진정을 받는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동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 <핵심정리 56p>  
 ③ 동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 <핵심정리 56p>  
 ④ 동규칙 제15조 제2항 제5호 <핵심정리 56p>

[핵심정리] 수사경과 해제사유 등(동규칙 제15조)

|             |                                                                                                                                                                                                                                                                                                                             |
|-------------|-----------------------------------------------------------------------------------------------------------------------------------------------------------------------------------------------------------------------------------------------------------------------------------------------------------------------------|
| 필요적<br>해제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경과를 해제하여야 함<br>① 직무 관련 금품 · 향응 수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br>② 5년간 연속으로 비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우<br>③ 제14조(수사경과의 유효기간 및 갱신)에 따른 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                                                                                                                                                                 |
| 임의적<br>해제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음<br>① 직무 관련 금품 · 향응수수 외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br>② 인권침해, 편파수사 등에 관한 시비로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수시로 진정을 받는 경우<br>③ 과도한 채무부담 등 경제적 빈곤상태가 현저하거나, 도박 · 사행행위 · 불건전한 이성관계 등 성실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br>④ 수사업무 능력 · 의욕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br>⑤ 2년간 연속으로 수사부서 전입을 기피하는 경우<br>⑥ 그 밖에 수사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수사경과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

**정답** ②

## 9 「국가공무원법」상 휴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이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의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 ② 공무원이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③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30일 이내에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④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해설

- ①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4호 <핵심정리 64p>
- ② 동법 제72조 제5호 <핵심정리 64p>
- ③ (X)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핵심정리 65p>
- ④ 동법 제72조 제10호 <핵심정리 65p>

### [핵심정리] 휴직

|            |                                                                                                                                                                                                                                                                                                                                                                                                                                                                                                                                                                                                                                                                                                  |
|------------|--------------------------------------------------------------------------------------------------------------------------------------------------------------------------------------------------------------------------------------------------------------------------------------------------------------------------------------------------------------------------------------------------------------------------------------------------------------------------------------------------------------------------------------------------------------------------------------------------------------------------------------------------------------------------------------------------|
| 직권휴직<br>사유 | <p>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요양비 지급대상 질병 또는 부상</li> <li>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li> </ol> </li> <li>②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휴직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함</li> <li>③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함</li> <li>④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함</li> <li>⑤ 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함</li> </ol> |
| 의원휴직<br>사유 | <p>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단, ④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 휴직기간은 그 채용기간으로 함(단,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면 3년 이내로 함)</li> <li>②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li> <li>③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함</li> <li>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함</li> </ol>                                                                                                                                                             |

|            |                                                                                                                                                                                                                                                                                                           |
|------------|-----------------------------------------------------------------------------------------------------------------------------------------------------------------------------------------------------------------------------------------------------------------------------------------------------------|
| 의원휴직<br>사유 | ⑤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음<br>⑥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br>⑦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함 |
| 휴직의<br>효력  |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

정답 ③

## 10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심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 ④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 해설** → ① (X)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제1항). <핵심정리 78p>
- ② 동령 제12조 제1항 <핵심정리 78p>  
 ③ 동령 제12조 제3항 <핵심정리 78p>  
 ④ 동령 제18조 제1항 <핵심정리 78p>

정답 ①

## 11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상 감독자의 정상참작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임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 ②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때
- ③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사전에 발견하여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때
- ④ 기타 부하직원에 대하여 평소 철저한 교양감독 등 감독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된 때

- 해설** → ② (X) 행위자의 정상참작 사유이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3호).  
 ①③④ <이상 핵심정리 79p>

[핵심정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상 정상참작 사유

| 행위자의 참작 사유                                                                                                                                                                                                                                                                                                                                        | 감독자의 참작 사유                                                                                                                                                                                                                                                                                                                                              |
|---------------------------------------------------------------------------------------------------------------------------------------------------------------------------------------------------------------------------------------------------------------------------------------------------------------------------------------------------|---------------------------------------------------------------------------------------------------------------------------------------------------------------------------------------------------------------------------------------------------------------------------------------------------------------------------------------------------------|
| ①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위반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해 처벌사유가 되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없는 때<br>②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의 잘못이 발생한 때<br>③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때<br>④ 의무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br>⑤ 발생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하거나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한 때<br>⑥ 간접 또는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공로가 있을 때 | ①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사전에 발견하여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때<br>②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가 감독자 또는 행위자의 비번일, 휴가기간, 교육기간 등에 발생하거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등 감독자의 실질적 감독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된 때<br>③ 부임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br>④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부하직원의 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상 조치(전출 등)를 상신하는 등 성실히 관리한 이후에 같은 부하직원이 의무위반행위를 야기하였을 때<br>⑤ 기타 부하직원에 대하여 평소 철저한 교양감독 등 감독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된 때 |

**정답** ②

## 12 경찰상 강제집행의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직접강제란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직접 의무자의 신체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 ② 강제징수의 일반법으로서 「국세징수법」이 있다.
- ③ 집행벌은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④ 대집행이란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작위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해설** → ④ (X) 대집행이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작위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핵심정리 89p>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90p>

**정답** ④

## 13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2조 직무 범위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도 경찰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 ③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 ④ 최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2019. 6. 25. 시행)을 통해 불심검문 시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신분증명을 면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 해설** →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핵심정리 94p>  
 ② 동법 제2조 제2호의2 <핵심정리 94p>  
 ③ 동법 제3조 제1항 <핵심정리 95p>  
 ④ (X)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2019. 6. 25. 시행) 시 개정사항은 손실보상(제11조의2),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제11조의3)에 관한 내용이며, 불심검문 시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신분증명을 면제하는 규정에 관한 내용은 없다. <핵심정리 95p>

**정답** ④

#### 14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② 물건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 ③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④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해설** →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1항 <핵심정리 105p>  
 ②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핵심정리 106p>  
 ③ (X)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법 제11조의2 제2항). <핵심정리 105p>  
 ④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핵심정리 106p>

**정답** ③

#### 15 경찰조직 편성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통솔범위의 원리란 조직목적수행을 위한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명령통일의 원리란 조직 구성원 간에 지시나 보고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시는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③ 명령통일의 원리에 따르면 관리자의 공백 등을 대비하여 대리, 위임, 유고관리자 사전지정 등이 필요하다.
- ④ 계층제의 원리는 권한과 책임의 배분을 통하여 신중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해설** → ① (X) 조직목적수행을 위한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성하는 것은 계층제의 원리이다. <핵심정리 111p>

②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111p>

[핵심정리] 계층제의 원리와 명령통일의 원리

|          |                                                                                                                                                                                                                                                                                                                                                                                        |
|----------|----------------------------------------------------------------------------------------------------------------------------------------------------------------------------------------------------------------------------------------------------------------------------------------------------------------------------------------------------------------------------------------|
| 계층제의 원리  | ① 조직목적 수행을 위한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하로 나누어 배치하고,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성하는 것 → 수직적인 상하명령 복종관계를 특징으로 함<br>② 조직의 일체감과 통일성을 유지하는데 기여 → 계층제의 필요성<br>③ 명령과 지시를 일사분란하게 수행하도록 하는데 적합하며, 지휘계통을 확립하고 조직의 업무수행에 통일을 기할 수 있으며, 권한과 책임의 배분을 통하여 업무의 신중을 기할 수 있음<br>④ 계층이 많아질수록 업무처리 과정이 지연되고 많은 관리비용을 발생시키고 계층간 갈등이 증가하게 되며, 조직의 경직화를 가져와 환경변화에 대한 조직의 신속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새로운 지식·기술 등 도입이 곤란함 |
| 통솔범위의 원리 | ① 1인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정하는 원리 → 한사람이 직접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는 업무의 성격, 부서의 역사, 고용기술, 작업성과 기준에 달려 있음<br>② 계층의 수, 업무의 단순성, 시간적·공간적 요인, 부하의 능력, 감독자의 리더십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러한 통솔범위를 재검토함으로써 직급조정과 인력재배치 작업으로 연결되는 것임 → 구조조정의 문제와 관련성 있음<br>③ 통솔범위는 신설부서보다는 오래된 부서, 지리적으로 분산된 부서보다는 근접한 부서, 복잡한 업무보다는 단순한 업무의 경우에 넓어짐(전문적 사무의 경우 통솔범위가 좁음) ※ 청사의 규모는 통솔범위와 관련 없음                |

**정답** ①

## 16 「국가재정법」상 경찰 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경찰청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해설** → ① 국가재정법 제28조 <핵심정리 117p>  
 ② 동법 제29조 제1항 <핵심정리 117p>  
 ③ 동법 제42조 <핵심정리 117p>  
 ④ (X)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동법 제32조). <핵심정리 117p>

**정답** ④

### 17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I 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중요성과 가치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한구역이란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④ 통제구역이란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 해설** → ①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핵심정리 125p>  
 ② (X)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아니 된다(동규칙 제34조 제1항). <핵심정리 125p>  
 ③ 동규칙 제54조 제1항 제2호 <핵심정리 127p>  
 ④ 동규칙 제54조 제1항 제3호 <핵심정리 127p>

**정답** ②

### 1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적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 및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언론사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해설** → 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핵심정리 134p>  
 ② 동법 제15조 제1항 <핵심정리 134p>

- ③ (X)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언론사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제4항 제5호). <핵심정리 134p>
- ④ 동법 제18조 제1항 <핵심정리 135p>

**정답** ③

**19 「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상 감사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시정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피감사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징계 또는 문책 요구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 ㉣ 변상명령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 ㉠㉡                                          (2) ㉢㉣  
(3) ㉦㉧                                          (4) ㉩㊱

**해설** ㉠ (X) 감사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선 요구

㊤ (X)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정요구

㉞㉞ 항목이 옳다. <이상 핵심정리 150,151p>

[핵심정리] 감사결과의 조치기준 등(동규칙 제21조)

|                |                                                                                                              |
|----------------|--------------------------------------------------------------------------------------------------------------|
| 징계 또는<br>문책 요구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br>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
| 시정 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br>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경고·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br>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피감사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
| 개선 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권 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피감사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br>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통 보            |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br>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피감사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
| 고 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답 ②

**2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서면으로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 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해설** → ① (X)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핵심정리 141p>
- ② (X)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동법 제17조 제1항). <핵심정리 141p>
- ③ 동법 제19조 제2항 <핵심정리 142p>
- ④ (X)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동법 제11조 제1항). <핵심정리 141p>

**정답** ③**21 범죄원인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Miller는 범죄는 하위문화의 가치와 규범이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하였다.
- ② Cohen은 하류계층의 청소년들이 목표와 수단의 괴리로 인해 중류계층에 대한 저항으로 비행을 저지르며, 목표달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만들게 되는데 범죄는 이러한 하위문화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한다.
- ③ ‘사회해체론’과 ‘아노미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구조의 특성에서 찾는 사회적 수준의 범죄원인이론이다.
- ④ Durkheim은 좋은 자아관념이 주변의 범죄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행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

- 해설** →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162~163p>
- ④ (X) Durkheim은 범죄는 아노미 상태에서 발생한다고 보았고, 좋은 자아관념이 주변의 범죄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행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본 사람은 Reckless(견제이론)이다. <핵심정리 164p>

**정답** ④



- ③ 임시조치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판사의 결정으로 학대행위자의 권한 또는 자유를 일정기간동안 제한하는 조치이다.
- ④ 긴급임시조치에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이 있다.

- 해설** → ① (X) 응급조치에 대한 설명이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핵심정리 194p>
- ② (X) 응급조치상 격리란 학대행위자를 72시간을 기한으로 피해아동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의미한다(동법 제12조 제3항). <핵심정리 194p>
- ③ 동법 제19조 제1항 <핵심정리 195p>
- ④ (X) 긴급임시조치에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있다(동법 제13조 제1항, 제19조 제1항 1,2,3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는 임시조치의 내용이다(동법 제19조 제1항). <핵심정리 194, 195p>

**정답** ③

## 25 다음 중 수사구조개혁 찬성 측에서 채택할 수 있는 논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사 기소 단계의 권한을 분산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모든 권한이 검사에 집중되어 있어 각종 폐해가 발생하더라도 견제나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 ② 수사와 기소의 분리, 형사사법 권한의 분산을 통해 경찰과 검찰이 각자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 정의의 실현은 물론 국민 편의 제고가 가능하다.
- ③ 경찰은 수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수사지휘 역량 및 수사 과정의 인권보장제도 강화와 수사 전문성 함양에 노력하고 있고, 경찰권을 분산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개혁 등 다양한 경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④ 막강한 정보수집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경찰에의 권력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어렵게 된다.

- 해설** → ①②③ 수사구조개혁 찬성 측의 논거로 옳다. <핵심정리 200p>
- ④ (X) 수사구조개혁 반대 측의 논거이다. <핵심정리 200p>

[핵심정리] 경찰수사권 독립(조정) 찬반론

|         |                                                                                                                                                                                                                                                                                                                                      |
|---------|--------------------------------------------------------------------------------------------------------------------------------------------------------------------------------------------------------------------------------------------------------------------------------------------------------------------------------------|
| 찬성론의 논거 | <p>①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차이로 인하여 사건이 송치된 후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불필요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국민의 편의 저해)</p> <p>② 경찰수사기관은 검사와 상급경찰의 이중의 지휘를 받게 됨에 따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인 명령통일의 원리에 위배되고 수사행정의 효율화를 저해함(명령통일원리 위배)</p> <p>③ 국가정책적 고려를 요하는 범죄나 법률관계가 복잡한 범죄 이외에 경찰이 인지한 대부분의 일상범죄에 대한 수사개시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현실과 법규범의 괴리)</p> |
|---------|--------------------------------------------------------------------------------------------------------------------------------------------------------------------------------------------------------------------------------------------------------------------------------------------------------------------------------------|

|            |                                                                                                                                                                                                                                                                                                                                                                            |
|------------|----------------------------------------------------------------------------------------------------------------------------------------------------------------------------------------------------------------------------------------------------------------------------------------------------------------------------------------------------------------------------|
| 찬성론의<br>논거 | ④ 국가공권력의 대표격인 수사권을 공소권까지 가지고 있는 소수의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또한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는 현실에서는 <u>검찰의 권력남용 우려가 있음</u> (검찰로의 권력집중)<br>⑤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수사의 주재자인 검찰보다는 경찰에 집중되고 있어, 수사에 있어서 <u>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음</u>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
| 반대론의<br>논거 | ① 범죄수사는 공소제기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행위이기 때문에 공소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되어야 함(수사는 공소제기를 위한 준비행위 또는 수사는 공소제기와 불가분)<br>② 사법경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게 될 경우 수사의 합목적성만을 추구한 나머지 <u>적정절차와 인권존중의 요청을 외면하기 쉬움</u> (적정절차와 인권존중)<br>③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의 전(全)과정을 지휘함으로써 <u>법률지식 미흡으로 인한 법집행의 왜곡을 막을 수 있음</u> (법집행의 왜곡방지)<br>④ 막강한 정보수집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u>경찰에의 권력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음</u> (경찰로의 권력집중) |

정답 ④

## 26 마약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외마약이란 일반약품에 마약성분을 미세하게 혼합한 약물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감기약 등으로 판매되는 합법의약품이다.
- ② 향정신성의약품 중 텍스트로 메트로판은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으며 의존성과 독성이 강하다.
- ③ 마약의 분류 중 합성 마약으로는 헤로인, 옥시코돈, 하이드로폰 등이 있다.
- ④ GHB는 무색 무취의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특히 미국, 유럽 등지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정글 주스'라고도 불린다.

해설

- ① 한외마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다. <핵심정리 257p>
- ② (X) 향정신성의약품 중 텍스트로 메트로판은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으나 의존성과 독성은 없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된다. <핵심정리 259p>
- ③ (X) 헤로인, 옥시코돈, 하이드로폰 등은 반합성마약이다. <핵심정리 257p>
- ④ (X) GHB(gamma-hydroxybutyric acid)는 미국, 유럽 등지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도 불리는데, 무색무취로써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물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에서 '물뽕'이라고도 한다. '정글주스'라고도 불리는 것은 텍스트로메트로판(러미라)이다. <핵심정리 259p>

[핵심정리] 마약의 분류

|      |                                                                                                                                                                                                                          |
|------|--------------------------------------------------------------------------------------------------------------------------------------------------------------------------------------------------------------------------|
| 천연마약 | 양귀비, 생아편, 몰핀, 코데인, 테바인, 코카인, 크랙 등                                                                                                                                                                                        |
| 한외마약 | 코데날, 코데잘, 코데솔, 유코데, 세코날 등(처벌되지 않음)<br>※ 한외마약 - 일반약품에 마약성분을 미세하게 혼합한 약물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감기약 등으로 판매되는 합법의약품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약국개설자 등의 판매장부 비치, 판매허용량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약국에서 시판 중인 주요 한외마약 : 인산코데인정, 진고데스정 등). |

|       |                                         |
|-------|-----------------------------------------|
| 합성마약  | 페치딘계, 메사돈계, 프로폭시펜, 아미노부텐, 모리피난, 벤조모르핀 등 |
| 반합성마약 | 헤로인, 히드로모르핀, 옥시코돈, 하이드로폰 등              |

## [핵심정리]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

|                       |                                                                                                                                                                                                                                                                                                                                                                                                                        |
|-----------------------|------------------------------------------------------------------------------------------------------------------------------------------------------------------------------------------------------------------------------------------------------------------------------------------------------------------------------------------------------------------------------------------------------------------------|
| 메스암페타민<br>(필로폰, 히로뽕)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강한 각성작용으로 의식이 뚜렷해지고 잠이 오지 않으며 피로감이 없어짐</li> <li>② 식욕감퇴, 환시, 환청, 편집증세, 과민반응, 피해망상증 등을 경험함</li> <li>③ 복용 등 방법 : 정맥혈관 주사, 커피, 우유 등 음료수에 섞어서 음용, 코로 흡입 등</li> </ol>                                                                                                                                                                                                               |
| LSD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는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麥角)에서 발견되어 이를 분리·가공·합성한 것으로 무색, 무취, 무미함</li> <li>② 환각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며, 미량을 유당·각설탕·과자·빵 등에 첨가시켜 먹거나 우편·종이 등의 표면에 묻혔다가 뜯어서 입에 넣는 방법으로 복용하기도 함</li> <li>③ 동공확대, 심박동 및 혈압상승, 수전증, 오한 등의 증상</li> <li>④ LSD는 내성이나 심리적 의존성이 있지만 금단현상은 일으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부 남용자들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환각현상을 경험하는 플래시백(flashback) 현상을 일으키기도 함</li> </ol> |
| 엑스터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엑스터시(ecstasy, MDMA 또는 XTC)는 1914년 독일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되었으나 1980년대 마약으로 변질되었음.</li> <li>② 기분이 좋아지는 약, 포옹마약(Hug Drug), 클럽마약, 도리도리 등으로 지칭되며, 복용하면 신체적 접촉 욕구가 강하게 발생함</li> <li>③ 복용자는 테크노, 라이브, 파티장 등에서 막대사탕을 물고 있거나 물을 자주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함</li> </ol>                                                                                                                                      |
| 야바<br>(YABA)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태국어로 '미치게 하는 약'이라는 뜻을 가진 암페타민계 합성마약류</li> <li>②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어 유흥업소 종사자, 육체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됨</li> <li>③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으로 순도가 20~30% 정도로 낮음</li> <li>④ 원재료가 화공약품인 관계로 양귀비의 작황에 좌우되는 헤로인과는 달리 안정적인 밀조가 가능함</li> </ol>                                                                                                                                    |
| GHB<br>(물뽕)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GHB(gamma-hydroxybutyric acid)는 미국, 유럽 등지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도 불리는데, 무색무취로써 짭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물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에서 '물뽕'이라고도 함</li> <li>② 근육강화 호르몬 분비효과가 있으며, 사용 후 15분 후에 효과가 발현되고 3시간 정도 지속됨</li> </ol>                                                                                                                                                      |
| 덱스트로<br>메트로판<br>(러미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진해거담제(감기, 만성 기관지염, 폐렴 등 치료제)로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구입 가능함</li> <li>②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으나 의존성과 독성은 없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됨</li> <li>③ 도취감 혹은 환각작용을 맛보기 위해 사용량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20~100정을 흔히 남용</li> <li>④ 청소년들이 소주에 타서 마시기도 하는데 이를 '정글주스'라고도 함</li> </ol>                                                                                                                                     |
| 카리소프로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 일명 S정)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으며, 과다사용시 치명적으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를 가져오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음</li> <li>② 금단증상으로는 온몸이 뻣뻣해지고 뒤틀리며, 혀꼬부라지는 소리 등을 하게 됨</li> </ol>                                                                                                                                                                                                     |

정답 ①

## 27 과학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유류품 수사시 착안점으로 동일성, 관련성, 기회성, 완전성을 들 수 있는바, 유류품이 범행시와 동일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가를 검사하는 것은 완전성과 관련된다.
- ㉡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관계자지문을 제외하고 남은 지문은 범인지문으로 추정되는 지문으로서 이를 유류지문 이라고 하며, 손가락으로 마르지 않은 진흙을 적당히 눌렀을 때 나타나는 지문은 역지문이다.
- ㉢ 각막의 혼탁은 사후 12시간 전후 흐려져서 24시간이 되면 현저하게 흐려지고, 48시간이 되면 불투명해진다.
- ㉣ 시체균음은 턱관절에서 경직되기 시작하여 사후 12시간 정도면 전신에 미친다.

① ㉠㉡

② ㉠㉢㉣

③ ㉡㉢㉣

④ ㉠㉡㉢㉣

### 해설

- ㉠ (O) <핵심정리 216p>  
 ㉡ (O) <핵심정리 246p>  
 ㉢ (O) <핵심정리 248p>  
 ㉣ (O) <핵심정리 248p>

[핵심정리] 사체의 초기현상(물리적 변화)

|        |                                                                                                                                                                                                                                                                                                                                                                 |
|--------|-----------------------------------------------------------------------------------------------------------------------------------------------------------------------------------------------------------------------------------------------------------------------------------------------------------------------------------------------------------------|
| 체온의 냉각 | ① 사망 후에는 체열이 방출만 되므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체온이 주위의 온도와 같아지게 됨.<br>경우에 따라서는 수분 증발로 주위의 온도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음<br>② 체온은 항문에 검온기(檢溫器)를 삽입하여 곧창자 내의 온도 측정                                                                                                                                                                                                                              |
| 시체건조   | ① 사망 후에는 수분의 공급이 정지되므로 몸의 표면은 습윤성(濕潤性)을 잃고 건조하게 됨<br>② 피부·입술·항문 등 외부에 노출된 부위의 피혁상화(皮革狀化)                                                                                                                                                                                                                                                                        |
| 각막의 혼탁 | 각막은 일반적으로 사후 12시간 전후부터 흐려지기 시작하고, 24시간 이상이 경과하면 현저하게 흐려지게 되고, 48시간 이상 경과하면 완전히 불투명하게 됨                                                                                                                                                                                                                                                                          |
| 시체얼룩   | ① 사망으로 혈액순환이 정지되고 중력에 의하여 적혈구가 신체의 낮은 곳으로 모이게 되는 혈액침전(血液沈澱) 현상 때문에 시체의 피부 하부가 멍이 든 것처럼 암적갈색(暗赤褐色)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함<br>② 시체얼룩은 주위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게 나타남<br>③ 통상 목땀 등 특이사항이 없는 시체는 암적색을 띠. 익사 또는 저체온사와 같이 차가운 곳에서 사망하거나 사망 후에라도 차가운 곳에 둔 경우, 일산화탄소나 청산가리 중독의 경우에는 선홍색을 띠. 염소산칼륨이나 아질산소다 중독의 경우에는 황갈색이나 암갈색을 띠며, 황화수소가스 중독의 경우에는 녹색을 띠<br>④ 시체얼룩을 통해 사망 당시의 시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음 |
| 시체균음   | ① 사망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 근육이 경직되고 관절이 고정되어 시체가 뻣뻣해지는 현상을 말함<br>② 턱관절에서 경직되기 시작하여 사후 12시간 정도면 전신에 미침<br>③ Nysten 법칙에 의한 때 시체균음은 일반적으로 턱관절 → 어깨관절 → 팔다리 → 손가락·발가락 순으로(신체의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됨                                                                                                                                                                                  |

정답 ④

**28 다음 중 경비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사장 경호와 관련하여 제1선(안전구역)에서는 출입자 통제관리 및 MD 설치 운용을 한다.  
 ② 개표소 경비와 관련하여 제2선(올타리 내곽)에서는 선거관리 위원회와 합동으로 출입자를 통제한다.  
 ③ 국가중요시설 경비와 관련하여 제2지대(주방어지대)에서는 주·야간 경계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통제가 될 수 있도록 경비인력을 운용한다.  
 ④ 국가중요시설 경비와 관련하여 제3지대(핵심방어지대)에서는 시설의 보강(지하화, 방호벽, 방탄막 등)을 최우선으로 한다.

**해설** → ① <핵심정리 300p>

|                    |                                                                                                                                                                                                                                                                |
|--------------------|----------------------------------------------------------------------------------------------------------------------------------------------------------------------------------------------------------------------------------------------------------------|
| 제1선<br>(안전구역 : 내부) | ① 절대안전 확보구역<br>② 피경호자가 위치하는 내부로서 옥내일 경우에는 건물자체를 말하며, 옥외일 경우에는 본부석이 통상적으로 해당함<br>③ 이것은 요인의 승·하차장, 동선 등의 취약개소로 피경호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거리 내의 지역임<br>④ 경호에 대한 주관 및 책임은 경호실이고 경찰은 경호실이 요청한 때 경력 및 장비를 지원함<br>⑤ 역할<br>㉠ 출입자 통제관리<br>㉡ MD 설치 운용<br>㉢ 비표 확인 및 출입자 감시 |
|--------------------|----------------------------------------------------------------------------------------------------------------------------------------------------------------------------------------------------------------------------------------------------------------|

② &lt;핵심정리 300p&gt;

③ (X) 주·야간 경계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통제가 될 수 있도록 경비인력을 운용하는 것은 제3지대(핵심방어지대)의 내용이다. <핵심정리 286p>

④ &lt;핵심정리 286p&gt;

[핵심정리] 3지대 개념의 방호

| 구 분              | 내 용                                                                                                                                                                                        |
|------------------|--------------------------------------------------------------------------------------------------------------------------------------------------------------------------------------------|
| 제1지대<br>(경계지대)   | ① 시설올타리 전방 취약지점에서 시설에 접근하기 전에 저지할 수 있는 예상 접근로상의 길목이나 감제고지(瞰制高地) 등을 통제하는 지대<br>② 불규칙적인 지역수색·매복활동으로 적의 은거 및 탐지활동 시행                                                                          |
| 제2지대<br>(주방어지대)  | ① 시설내부 및 핵심시설로 침투하는 적을 저지하기 위한 지대로서, 시설 및 올타리를 연결하여 외곽의 소총 유효사거리를 고려하여 설정<br>② 시설자체 경계, 주·야간 초소근무 및 순찰활동, CCTV 등 설치·운용                                                                     |
| 제3지대<br>(핵심방어지대) | ① 시설의 주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핵심시설이 있는 지대로서, 주방어지대의 종심(縱深)을 보강하고 침투한 적을 최종적으로 격멸하는 지대<br>② 주·야간 경계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통제가 될 수 있도록 경비인력 운용, 시설의 보강(지하화, 방호벽, 방탄막 등)을 최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하여 침투한 적을 최종적으로 격멸 |

**정답** ③

## 29 「통합방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합대사령관은 을중사태나 병중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위①에 따른 건의를 받은 때에는 중앙협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을중사태 또는 병중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 ③ 「통합방위법」상 통합방위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본부장이 되고,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시·도지사이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국무총리이다.
- ④ 국방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을중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 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해설** →

- ① 통합방위법 제12조 제4항 <핵심정리 288p>
- ② (X)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때에는 시·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을중사태 또는 병중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동법 제12조 제5항). <핵심정리 287, 288p>
- ③ 동법 제8조 제2항, 제4조, 제5조 <핵심정리 287p>
- ④ 동법 제12조 제2항 제1호 <핵심정리 288p>

**정답** ②

## 30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의 종류별 정황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이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보비상 을호 - 간첩 또는 정보사범 색출을 위한 경계지역 내 검문검색 필요 시
- ② 작전비상 을호 - 대규모 적정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징후가 현저한 경우
- ③ 수사비상 을호 - 사회이목을 집중시킬만한 중대범죄 발생 시
- ④ 경비비상 을호 - 대규모 집단사태 테러 재난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혼란하게 되었거나 그 징후가 예견되는 경우

**해설** →

- ① (X) 간첩 또는 정보사범 색출을 위한 경계지역 내 검문검색 필요 시는 정보비상 갑호의 내용이다.
- ② (X) 대규모 적정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징후가 현저한 경우는 작전비상 갑호의 내용이다.
- ③ (X) 사회이목을 집중시킬만한 중대범죄 발생 시는 수사비상 갑호의 내용이다.
- ④ (O) 옳은 연결이다. <이상 핵심정리 291p>

[핵심정리] 비상근무의 종류별 정황(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4조 제3항 [별표 1])

| 구 분  | 내 용                                                                                                                                                                                                                      |
|------|--------------------------------------------------------------------------------------------------------------------------------------------------------------------------------------------------------------------------|
| 경비비상 | <div>갑호</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계엄이 선포되기 전의 치안상태</li> <li>2. 대규모 집단사태·테러·재난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하게 되었거나 그 징후가 현저한 경우</li> <li>3.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치안수요의 급증으로 가용경력을 100%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li> </ol> |

|      |    |                                                                                                                    |
|------|----|--------------------------------------------------------------------------------------------------------------------|
| 경비비상 | 을호 | 1. 대규모 집단사태·테러·재난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혼란하게 되었거나 그 징후가 예견되는 경우<br>2.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치안수요가 증가하여 가용경력의 50%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 병호 | 1. 집단사태·테러·재난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의 혼란이 예견되는 경우<br>2.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치안수요가 증가하여 가용경력의 30%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작전비상 | 갑호 | 대규모 적정(敵情)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징후가 현저한 경우                                                                                   |
|      | 을호 | 적정이 발생하였거나 일부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경우                                                                                       |
|      | 병호 | 정·첩보에 의해 적 침투에 대비한 고도의 경계강화가 필요한 경우                                                                                |
| 정보비상 | 갑호 | 간첩 또는 정보사범 색출을 위한 경계지역 내 검문검색 필요시                                                                                  |
|      | 을호 | 상기 상황하에서 특정지역·요지에 대한 검문검색 필요시                                                                                      |
| 수사비상 | 갑호 | 사회이목을 집중시킬만한 중대범죄 발생시                                                                                              |
|      | 을호 | 중요범죄 사건발생시                                                                                                         |
| 교통비상 | 갑호 | 농무, 풍수설해 및 화재로 극도의 교통혼란 및 사고발생시                                                                                    |
|      | 을호 | 상기 징후가 예상될 시                                                                                                       |

정답 ④

### 31 운전면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2종 보통면허로는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구난차등은 제외한다) 등을 운전할 수 있다.
- ②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 4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종 특수면허 중 소형견인차 면허를 가지고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 ④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해설➡

-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핵심정리 317p>
- ② (X)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 4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핵심정리 319p>
- ③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핵심정리 316p>
- ④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핵심정리 319p>

정답 ②

### 32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음주측정 시에 사용하는 불대는 1회 1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불일치할 경우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우선한다.
- ③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 ④ 음주운전 최초 위반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퍼센트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

- ①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0조 제3항 <핵심정리 324p>
- ② 대법원 2003도6905 <핵심정리 326p>
- ③ 대법원 2008도7143 <핵심정리 327p>
- ④ (X) 음주운전 최초 위반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0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핵심정리 325p>

[핵심정리] 음주운전 처벌기준

| 위반횟수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
| 1회 위반                | 0.03% 이상~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
|                      | 0.08% 이상~0.20% 미만 | 1년~2년 이하/500만원~1천만원  |
|                      | 0.2% 이상           | 2년~5년 이하/1천만원~2천만원   |
|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br>2회 이상 |                   |                      |
| 음주측정거부               |                   | 1년~5년 이하/500만원~2천만원  |

**정답** ④

### 33 교통사고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 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 ② 보행자가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하였다면,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다해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교통조사관은 교통사고조사규칙에 따라 차대차 사고로서 당사자 간의 과실이 동일한 경우 피해가 경한 당사자를 선순위로 지정한다.
- ④ 택시운전자인 甲이 교차로에서 적색등화에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乙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乙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당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설** → ① 대법원 2009도787 <핵심정리 336p>

② (X)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7도9598). <핵심정리 335p>

③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0조의4 제2호 <핵심정리 330p>

④ 대법원 2011도3970 <핵심정리 337p>

**정답** ②

### 34 정보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관련 문서의 배포범위를 제한하거나 폐기 대상인 문서를 파기하는 등의 관리방법은 물리적 보안조치에 해당한다.
- ② 정보배포의 원칙으로 필요성, 적당성, 보안성, 적시성, 계속성이 있다.
- ③ 어떤 수시적 돌발상황의 해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임시적, 단편적, 지역적 특수사건을 단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구되는 첩보를 SRI(특별첩보요구)라고 한다.
- ④ 정보배포의 원칙 중 계속성은 특정 정보가 필요한 정보사용자에게 배포되었다면 그 정보의 내용이 계속 변화되었거나 관련 내용이 추가적으로 입수되었거나 할 경우 정보는 계속적으로 사용자에게 배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해설** → ① (X) 관련 문서의 배포범위를 제한하거나 폐기 대상인 문서를 파기하는 등의 관리방법은 정보의 분류조치에 해당한다. <핵심정리 357p>

② <핵심정리 357p> ③ <핵심정리 352p> ④ <핵심정리 357p> 모두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정보 배포의 원칙 중 보안성의 원칙

|             |                                                                                                                                                                                                                                                                                                                 |
|-------------|-----------------------------------------------------------------------------------------------------------------------------------------------------------------------------------------------------------------------------------------------------------------------------------------------------------------|
| 정보의<br>분류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요문서와 같은 정보들을 여러 등급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관리방법과 열람자격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의 유출을 막는 일련의 조치</li> <li>② 문서에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관련 정보나 문서를 열람하는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 관련 문서의 배포범위를 제한하거나 폐기 대상인 문서를 파기하는 등의 관리방법</li> </ul>                                                                                  |
| 인사보안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민감한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해당 정보들이 공무원이 될 자 또는 공무원에 의해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li> <li>② 정보의 배포과정에서는 배포 담당 공무원의 채용과 임명 과정에서의 보안심사 또는 보안서약의 징구, 이들에 대한 보안교육 등의 조치</li> </ul>                                                                                     |
| 물리적<br>보안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보호가치 있는 정보를 보관하는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그 시설에 대한 보안조치를 실시하는 방안들을 총칭하는 것</li> <li>② 일반적으로 정보관리 부서가 속한 건물에 대한 보호구역의 설정과 시설보안의 분야로 분류됨</li> <li>③ 정보부서의 소재지 또는 소재 시설물에 대한 보안조치의 성격이 강한 분야로서 배포과정에는 적용될 여지가 낮으나, 정보배포기관 또는 부서, 정보배포를 위한 이동수단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물리적 보안조치가 필요함</li> </ul> |

|        |                                                                                                                                                                                                                                              |
|--------|----------------------------------------------------------------------------------------------------------------------------------------------------------------------------------------------------------------------------------------------|
| 통신보안조치 | ① 종래 전선과 전파를 이용한 통신이 도청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의미했으나 정부의 주요한 통신수단으로 컴퓨터 통신이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됨<br>②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조치는 오늘날 통신보안의 가장 중요한 분야임<br>③ 정보의 배포수단으로 전선과 전파,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할 경우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는 필수적임 |
|--------|----------------------------------------------------------------------------------------------------------------------------------------------------------------------------------------------------------------------------------------------|

정답 ①

### 3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옥외집회와 시위의 장소가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③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12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철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④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해설** →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핵심정리 366p>  
 ② 동법 제7조 제1항 <핵심정리 368p>  
 ③ (X) 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제3항). <핵심정리 370p>  
 ④ 동법 제6조 제1항 <핵심정리 366p>

정답 ③

### 36 보안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금품수수죄와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간첩죄, 물건제공이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이다.
- ②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 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정기신고를 해야 한다.
- ③ 피보안관찰자는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
- ④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법무부 장관)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해설** → ① 보안관찰법 제2조 <핵심정리 409p>

- ② 동법 제18조 제2항 <핵심정리 410p>
- ③ 동법 제18조 제4항 <핵심정리 410p>
- ④ (X)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법무부 차관)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동법 제12조 제3항). <핵심정리 411p>

정답 ④

### 37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 ③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 10일 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방문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④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 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해설** →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핵심정리 412p>  
 ② 동법 제9조 제7항 제1호 <핵심정리 412p>  
 ③ (X)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 7일 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방문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핵심정리 412p>  
 ④ 동법 제3조 <핵심정리 412p>

정답 ③

### 38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 ② 재난상륙 · 긴급상륙 · 승무원상륙 허가기간은 각각 30일 이내이며, 난민임시상륙 허가기간은 90일 이내이다.
- ③ 수사기관이 출입국사범을 입건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 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사건을 인계한다.
- ④ 법무부장관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해설** → ①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핵심정리 428p>  
 ② (X) 재난상륙 · 긴급상륙 허가기간은 각각 30일 이내이며, 승무원상륙 허가기간은 15일 이내이다(동법 제14조 부터 제16조의2). <핵심정리 435p>  
 ③ 동법 제101조 제2항 <핵심정리 434p>  
 ④ 동법 제12조의2 제3항 <핵심정리 427p>

정답 ②

### 39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국인 피의자 체포 구속 시, 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7일 이내 해당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② 미군의 공무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에 대하여 미군 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며, 공무집행의 범위에는 공무 집행으로 인한 범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에 부수하여 발생한 범죄도 포함된다.
- ③ 미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미국 군대의 구성원에 의존하는 자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 ④ 주한미군의 공무 중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전적으로 미군 측의 책임으로 밝혀진 경우 미군 측이 75%, 한국 측이 25%를 부담하여 배상한다.

**해설** → ① (X) 중국인 피의자 체포 구속 시, 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4일 이내 해당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핵심정리 441p>  
 ②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442~445p>

**정답** ①

### 40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터폴 협력의 원칙으로는 주권의 존중, 일반법의 집행, 보편성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 업무방법의 유연성 등이 있다.
- ② 1923년 비엔나에서 19개국 경찰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국제형사경찰회의가 개최되어 국제형사경찰위원회(ICPC :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Commission)를 창립하였다.
- ③ 법무부장관은 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외국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받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교환, 국제범죄의 동일증명 및 전과조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는 변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흑색수배서(Black Notice), 장물수배를 위한 장물수배서(Stolen Property Notice), 범죄관련인 소재확인을 위한 청색수배서 (Blue Notice) 등이 있다.

**해설** → ③ (X)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외국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받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교환, 국제범죄의 동일증명 및 전과조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8조 제1항). <핵심정리 448p>  
 ①②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446~448p>

**정답** ③